

의안번호	제 62 호
의 결 연 월 일	2006 년 월 일 (제 255 회)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6 년 12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연월일 : 2006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 12. 31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 적용기간을 2009. 12. 31로 변경하고,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등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

### 나.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추가(안 제11조)

-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 추가

### 다.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신설, 안 제11조의 2)

-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 제12조)**

-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신설에 따라 동일한 감면규정을 정비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 제16조)**

- 관련 법규정의 개정 및 사업시행일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감면규정 확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를 “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로 하고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한다)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운송계약후 당해 차량을 1년 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의 제목중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

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 받아”를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로 하며,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

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조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를 “대체입주하는 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u>시외버스운송사업</u> 및 <u>농어촌버스운송사업</u>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11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p> <p>①~③(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p> <p>-----</p> <p>-----</p> <p>-----</p> <p>-----</p> <p>-----<u>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u>에-----</p> <p>-----</p> <p>-----</p> <p>-----.</p> <p>제11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u>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u></p>  <p>제11조의2 (<u>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u>) <u>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하다)를 통해 사업용화</u></p>

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운송계약후 당해 차량을 1년 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제12조 (주택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  
-----  
-----  
-----  
-----  
-----  
-----  
-----  
-----  
-----

주택

-----  
-----  
-----  
-----  
-----  
-----  
-----  
-----

경우에는



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  
 -----  
 -----  
 -----주택-----  
 -----  
 -----주택-----  
 -----  
 -----  
 -----  
 -----  
 -----  
 -----  
 -----  
 -----.

<삭제>

<삭제>

<삭제>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

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삭제>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3년전 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 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삭제>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삭제>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p>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lt;신설&gt;</p>	<p>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p>
<p>&lt;신설&gt;</p>	<p>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p>
<p>&lt;신설&gt;</p>	<p>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p>	<p>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p>

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  
 공단지애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애 한  
 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  
 지내의 부동산애 대하여는 취득  
 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공장용애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  
 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  
 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 그 해당부분애 대하여는 면  
 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한다.

----- 대체입주 하는 자-----

---

## 【관계법령】

###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